

1.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수속

(1) 재류 수속

여기서는 재류관리제도의 대상자인 '중장기 재류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외국인(중장기 재류자)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중장기 재류자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재류기간이 '3 개월' 이내인 사람
- (2) 재류자격이 '단기재류'인 사람
- (3) 재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인 사람
- (4) 법무성령으로 (1)~(3)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
- (5) 특별영주자
- (6) 재류자격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새롭게 일본에 입국하여 이즈미사노시에 거주할 경우】

수속 흐름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

상륙허가에 따라 중장기 재류자가 된 사람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중부공항, 간사이 공항, 신치토세 공항, 히로시마 공항, 후쿠오카
공항에서 입국

→그 자리에서 교부

그 외의 공항 및 해항에서 입국 → 이즈미사노 시청에 '전입신고'를 제출하면 신고한 주거지 앞으로
발송됩니다.

<이즈미사노 시청 시민과에서>

주거지 신고

전입신고 제출

※주거지를 정한 후 14 일 이내에 수속을 해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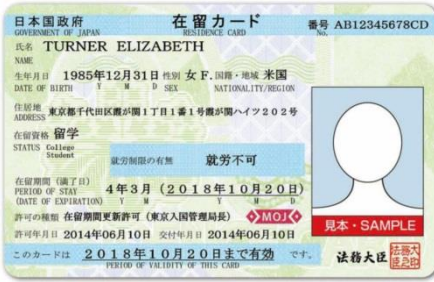
주민등록

주민표 작성

마이넘버 교부

1.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수속

① 재류카드



재류 카드에 기재되는 사항

얼굴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주거지, 재류자격, 재류기간, 근로 제한의 유무 등 재류기간이 만 16 세 미만인 사람의 재류카드에는 얼굴사진이 없습니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경찰관, 입국심사관 등이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대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만 16 세 미만인 사람은 휴대 의무가 면제됩니다.

유효기한

<영주자>

만 16 세 이상인 사람: 교부일로부터 7 년

만 16 세 미만인 사람: 만 16 세가 되는 생일날까지

<영주자 외>

만 16 세 이상인 사람: 재류기간 만기일까지

만 16 세 미만인 사람: 재류기간 만기일과 만 16 세가 되는 생일 중 빠른 날까지

재류카드에 관한 신고

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신고>

거주지에 관한 변경은 이즈미사노 시청 시민과에 신고합니다(거주지를 정한 후, 또는 변경한 후 14 일 이내).

- 새롭게 일본에 입국하여 이즈미사노시에 거주할 경우
준비물: 여권, 재류카드(입국 시 교부되었을 경우)
- 재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어 새롭게 중장기 재류자가 되었을 경우
준비물: 여권, 재류카드
- 이사했을 경우

1.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수속

준비물: 재류카드

※이즈미사노시가 아닌 곳에서 이즈미사노시로 이사한 경우에는 재류카드와, 이전에 거주한 지역의 관청에서 전출신고를 제출시 교부된 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속, 문의처

시민과

전화번호: 072-463-1212 (내선: 2111 ~ 2118)

<거주지 변경 이외의 신고>

거주지 이외의 변경은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신고합니다.

- 성명, 국적·지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류카드의 유효기한을 갱신할 경우(영주자, 만 16 세 미만의 사람)
- 재류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 근로자격(일부를 제외한다)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는 사람이나 유학생 등: 소속 기관(회사, 학교)의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도산, 고용기간 종료, 퇴학, 졸업, 전직, 전학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 재류자격이 ‘가족재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인 사람: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경우

재류기간을 연장할 경우나 재류자격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혹은 재류자격이 ‘유학’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등에도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속, 문의처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전화번호: 06-4703-2115

외국인 재류종합정보센터 오사카

전화번호: 0570-013904 (03-5796-7112)

<http://www.immi-moj.go.jp/info/index.html>

☆참고 사이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http://www.immi-moj.go.jp/korean/index.html>

1.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수속

② 재입국 허가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취득하면, 재입국 후에도 출국 전과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와, 허가 기간 안에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재입국 허가가 있습니다. 재입국이 가능한 기간은 본인의 재류기한 내이며, 최대 5년까지입니다.

유사 재입국 허가

일본에서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류기한이 만료가 될 경우에는, 재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 재입국 출국용 ED 카드의 유사 재입국 허가로 인한 출국의 의도 표명 란에 체크하여 재류 카드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http://www.immi-moj.go.jp/re-ed/EDcard_leaf_ko.pdf

☆참고 사이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새로운 재류관리제도 시작!』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